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여성 발전 센터 사용료 등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</p> <p>1. 제안경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개정조례안은 '99.11.1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'99.11.12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 <p>2. 제안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성 발전 센터의 세입·세출상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고,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미 받은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 <p>3. 주요골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성 발전 센터의 일부 사용료 등의 정수기준 및 금액을 현실화함(안 제2조 별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기술교육수강료 및 생활문화수강료 : 7,000원에서 10,000원으로 3,000원 인상 -수영수강료 : 금액 동일 정수기준을 월 12시간 이내에서 20시간 이내로 변경 ○ 이미 받은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4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개강일 또는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않은 것을 신고한 경우 : 전액 반환 -개강일 또는 시설이용일 개시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은 것을 신고한 경우 : 신고월을 제외한 잔여월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<p>4. 검토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 발전 센터의 수입 지출상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여 인상하고,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사용·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미 받은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. ○ 사용료 등의 정수금액 및 정수기준의 변경과 관련하여 기술교육 수강료와 생활문화수강료는 월 7,000원에서 10,000원으로 각각 3,000원(42.9%)를 인상하고, 보육료는 5,000원에서 7,500원으로 2,500(50%)을 인상하고, 수영수강료는 금액은 변경하지 않고 정수기준을 월 12시간 내에서 20시간 이내로 이용시간을 연장함. 	<p>생활문화수강료의 경우 1일 3시간 이내에서 2시간 이내로 1시간 단축한 것은 사실상 인상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이며, 수영수강료는 시간을 오히려 늘려 수강료를 인하한 효과가 있다고 보임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용료, 수강료 등의 인상으로 '99년 11월 정원을 기준으로 연간 2억 4백여 만원의 세입증대와 세출 중 자체수입 비중도 14.2%에서 18.2%로 개선이 예상됨. ○ 95년 1월 이후 조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인상요인을 반영하고, 실 소요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비춰볼 때 사용료 수강료 등의 인상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. ○ 다만, 사용료 등의 조정의 근거가 되는 수지 분석 내지 원가계산이 없이 타 시·도의 여성회관, 복지관 등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참고로 하여 인상률을 정한 것으로 인상률, 인상폭의 결정에 대한 산출근거가 미약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. ○ 수강료 등을 납부한 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세입이 감소될 수 있으나, 이용자의 편의제고와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때늦은 감이 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한 불편부당한 제도의 개선과 규제개혁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여성 발전 센터 사용료 등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여성 발전 센터 사용료 등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4조(사용료 등 반환)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이 반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개강일 또는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: 전액 반환 2. 개강일 또는 시설이용 개시일 이후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: 신고월을 제외한 잔여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<p>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
--	--